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13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송기헌·박정하·백혜련

주철현 · 강훈식 · 김태년

위성곤ㆍ허 영ㆍ박 정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면(減免)하며"를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하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제7조(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	
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면제하거나
바에 따라 <u>감면(減免)하며</u> , 그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u>에서 감액하며</u>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